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대한민국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사전질의서(List of Issues)에 대한 답변

**규약 이행에 관한 헌법적 및 법적 체계(제2조)**

1. 동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해, 동 조항을 계속 유보할 필요가 있을지를 재검토하는데 있어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채택한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및 입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와 당사국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채택한 모든 견해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1-1.(유보철회) 정부는 최초국가보고서 제276항, 4차 국가보고서 제311항-314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 하위 직급 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용자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입장으로서, 현재 동 조약의 유보를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2.(개인진정견해의 이행) 제4차 국가보고서 제29항에 언급된 바대로, 한국 정부는 개인진정결정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 또한 거쳤으나, 개인진정결정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진정결정의 내용이 관련 법 개정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물품반환, 기록말소, 사면 등 다양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결정 이행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한편 모든 개인진정 결정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의 결정을 받은 이란인에 대해서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 48/134)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선발 및 임명하는데 있어 명확,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입법의 부재를 다루기 위해 취한 조

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2-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9. 및 2015. 1.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 위원에 대한 심사기준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는 한편, 인권위원 임명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인권위원 선출·지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면서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규칙(2014. 12. 22. 제정)에 따라 위원 중 공석이 발생되기 3개월 전, 공석을 알리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임명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5. 7. 현재 인권위가 권고한 법안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3.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내에 등록된 모든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동 규약에 따른 인권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입법적 체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면화생산과 관련한 한국조폐공사(KOMSCO)와 대우인터내셔널의 활동 및 인도 Jagatsinghpur에서의 제철소 프로젝트와 관련한 POSCO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능한 기업의 책임성을 다루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일반적으로 한국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국내외 기업 활동 중의 인권침해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해외 한국기업 또는 그 소속 한국 직원이 외국에서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 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기업도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현재 인권기준 존중을 위한 별도의 법률 체계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중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인권·노동·환경보호 등에 관한 책임 준수에 관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포스코의 인도제철소 투자사업은 본격적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 정부가 포스코에 지원한 것은 없으나 유엔특별절차나 우리 시민사회의 우려를 포스코에 전달하여 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의하였다. 한국조폐공사는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펄프를 생산하

고 있는데, 아동강제노동 이슈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조폐공사는 2012년 12월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아동강제노동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2014년 우즈베키스탄에서 ILO협약 이행 책임을 가진 상공회의소와 노동인권에 관해 협의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세계은행과 공조를 추진 중이다. 한편 ILO는 2013년, 2014년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수확 시 아동노동에 대한 대대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일부 청소년의 노동이 발견되었으나 조직적 아동강제노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차별금지, 양성평등, 민족, 인종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혐오에 관한 옹호의 금지 그리고 소수자 인권(제2,3,20,26 및 27조)**

4. 사적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의 차별을 다루는 직·간접 차별 및 복합 차별을 금지하고 출신국, 성적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을 포함하여 종합적 차별 사유를 열거한 그리고 효과적인 행정적 및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4차 국가보고서 제377항, 제378항에 기재된 내용 이후 2013년 5월 발표된 새정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되었으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5. 인종적인 동기의 폭력이 범죄화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특히 외국인을 목표로 한 인종차별과 증오표현, 특히 대중매체 및 인터넷 상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지니는 한계성, 가령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만 동 개념이 적용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점, 한국태생이 아닌 두 명의 이주노동자를 다문화가정의 정의에서 배제하는 점 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5-1.(인종적 동기의 폭력 범죄화 등) 인종적 동기로 인한 폭행, 상해 등 물리적

폭력은 범죄행위로서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되, 폭력의 동기는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을 목표로 한 차별,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인종차별을 범죄의 별도 구성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인터넷 상 인종차별적 외국인혐오 발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권리침해 신고가 있을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게시물을 심의하여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방송에서의 인종차별과 증오표현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심의 제재하고 있고,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사유, 위반법규, 제재결과를 방송으로 시청자에게 고지한다.

국회에는 인종적 동기로 인한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인종적 동기의 표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나 이러한 행위를 형법적으로 규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5-2.(다문화가정 개념) 2000년대 초반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최초의 정책대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이민자와 한국국민으로 구성된 가족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인지·귀화자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2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을 외국인가족 및 유학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6. 미혼모 및 미혼모의 자녀, 탈북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애자등 성 소수자(LGBTI)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낙인에 맞서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병영 내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적행위를 비범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국이 이성간 및 동성간 강간행위(준강간행위)와 강간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우(취급)을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시해주십시오.

6-1.(차별방지 및 사회적 낙인 예방조치) 미혼모 가족 지원을 위해 전국 58개소의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주거지원 및 출산 등 의료지원,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HIV감염인 관련 2013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감염인 차별구제를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6-2.(병영내 동성간 성적행위 비범죄화 조치) 병영내 동성간 성행위는 집단 생활을 하는 병영의 특성과 군율을 유지하기 위해 금지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률인 「군형법」 제92조의6조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6-3.(강간 및 강제추행 형량) 2012년 12월 「형법」을 개정하여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제297조의2조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죄는 이성간 또는 동성간의 강간행위를 달리 취급한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태양을 규정한 것을 반영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2년으로 규정한 것일 뿐 법정형의 상한은 30년으로 동일하며 실제 양형은 구체적 범죄행위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강간이나 유사강간 피해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형사 절차 상 보호조치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조치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7. 다음의 경우: (a) 결혼생활 및 사회 내에서 여성,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b)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구, 특히 의사결정 직위를 포함한 정치적 및 공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관련 통계를 포함바람); (c) 근로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7-1.(결혼이민자) 정부는 전국 217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

주여성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교육훈련, 콜센터를 통한 갈등해결상담 및 이주여성보호시설과 연계한 긴급 지원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인권과 폭력대응 교육을 확대하고,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인과 혼인한 모든 외국인에는 대해서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한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계속 체류를 허용한다.

7-2.(여성대표성증진) 여성판사는 2000년 6.8%에서 2013년 27.4%로, 여성 검사는 동 기간 1.8%에서 25.4%로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은 4차 보고서 제56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정부는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12년 말 9.9%이며 2016년까지 15.1%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장, 국장, 부단체장에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표> 여성 지방정치(단체장, 의회의원) 참여 비율 (단위 : 명, %)

구분	선거명	계	성별		
			남	여(%)	
제4대 (2006)	합계(구성비율)	3,867	3,338	529(13.0)	
	시·도지사선거	16	16	-	
	자치구·시·군의 장	230	227	3(1.0)	
	시·도의원	지역구	655	623	32(4.0)
		비례대표	78	21	57(73.0)
	시·군·구의원	지역구	2,513	2,403	110(4.0)
비례대표		375	48	327(87.0)	
제5대 (2010)	합계(구성비율)	3,893	3,148(80.0)	745(20.0)	
	시·도지사선거	16	16	-	
	자치구·시·군의 장	228	222	6(2.6)	
	시·도의원	지역구	680	625	55(8.0)
		비례대표	81	23	58(71.0)
	시·군·구의원	지역구	2,512	2,238	274(9.2)
비례대표		376	24	352(93.0)	
제6대 (2014)	합계(구성비율)	3,930	3,076	854(21.7)	
	시·도지사선거	17	17	-	
	자치구·시·군의 장	226	217	9(4.0)	

	시·도의원	지역구	705	647	58(8.2)
		비례대표	84	29	55(65.5)
	시·군·구의원	지역구	2,519	2,150	369(14.6)
		비례대표	379	16	363(95.8)

<표>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 공무원 증가 추이

연도	전체	여성	비율
2007년	18,959	1,349	7.1
2008년	19,076	1,457	7.6
2009년	19,579	1,595	8.1
2010년	20,078	1,730	8.6
2011년	20,390	1,869	9.2
2012년	20,934	2,064	9.9
2013년	21,512	2,296	10.7
2014년	21,805	2,527	11.6

\* 고위공무원, 일반직(일반임기제 포함)1~5급, 일반임기제 6급, 연구·지도관, 별정직 1급상당~5급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전담직위 5급이상

7-3.(남녀임금격차) 2014년 15세 이상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0%이지만 출산·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여성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어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성별격차는 39.6%에서 36.6%로 약간 감소하였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육시설설치 지원, 육아휴직 급여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 위반 사업장은 임금차별시 2천만원 이하, 임금 외 금품 차별 시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제2,7 및 24조)

- 배우자간 강간의 범죄로서의 성격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사적인 가족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고 이들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기소 및 제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아동대상 성범죄와 교내폭력 및 왕따 문제 등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효

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구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8-1.(배우자간 강간) 2012년 12월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으며, 법원 또한 2009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던 판례에서 나아가 2013년 5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대법원 2012도14788판결).

8-2.(가정폭력·성폭력 대응) 정부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사적 가족문제로 보고 있지 않으며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2013년 새정부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이행을 점검한다. 2012년 12월에는 성범죄의 친고죄 관련 규정을 폐지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신고접수 시 경찰의 현장출동을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가정폭력에 관해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 처분 및 교화처분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등 가해자 처벌강화,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확대를 시행하고, 다문화 가정폭력피해자와 구성원 등에 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 구형·향소기준을 상향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제도 도입, 성범죄전담 검사 및 수사관 대상 전문교육실시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진술조력인 양성, 의료·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방송사와 연계하여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8-3.(아동대상폭력 해결)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우편으로 지역주민 등에게 고지한다. 성범죄자는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운영·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2014년 9월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중상해·상습범·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였으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 동행출동, 응급조치, 긴급입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이후 사법절차 등에서 보조인,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아동학대 인식전환 교육을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 교육하였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초·중·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성폭력 또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14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게 그 지원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아동학대피해자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자 중에서 국선변호사 예정자 중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5명이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받는다.

(학교폭력)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차(2010~2014)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던 2011년에는 학생의 자살로 인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로 인식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학교폭력예방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3차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추진 중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공감·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형 교육 및 학생들이 직접 토론,

변호, 판결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법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보급,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고 교내 CCTV 및 학생보호인력을 확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안교육, 보호관찰소·법사랑위원 선도 등 다양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 처리 시 검사의 결정 전에 교사의견을 청취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처분을 한다.

## 대 테러 조치(제7,9,10 및 14조)

9. 당사국이 대테러 법률, 특히 동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여 “테러 행위”를 규정하고, 통신의 도청, 수색, 구금과 추방을 규율하며, 테러행위나 관련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9-1. 현재 대테러관련 법률에 관해서는 제4차 국가보고서 제16항 내지 제19항에서 기재된 것 외에 제정된 법률이나 관련 규정은 없다. 한국은 현재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테러 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2012년~2016년 제19대 국회에는 테러방지에 관한 기본적 성격의 법률안 3건, 사이버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모든 법안은 테러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 및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하고, 대테러활동에서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였다.

## 생명권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제2,6,7,9 및 10조)

10. 청년 및 여성층에서 특히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그 조치의 영향을 보고해주십시오.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주십시오.

10-1.(자살방지대책) 2004년부터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2년부터 시

행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청소년·직장인·노인대상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는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기반 노인자살 예방사업’ 및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한 2013년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는 자살원인을 규명하여 예방정책수립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하고 있다.

10-2.(사형제폐지)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사형을 최고형으로 하여 형벌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별범죄의 형과 벌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할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여론과 법감정, 사회 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제19대 국회에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015년 7월 6일자로 발의되었다.

11. 다음 사안: (a) 고문이 형법 상 별개의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b) 고문 및 학대혐의가 효과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조사되는지 여부; (c) 어떠한 형법 조항에 근거해 고문 및 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자가 기소되었고 어떠한 종류의 제재가 부과되었는지에 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보고서(CCPR/C/KOR/4)의 121항에서 명시된 “현대적 보호장비”, 징계로서의 독방구금조치, 그리고 “보호장비”(가령, 수갑 및 안면보호구)의 사용이 응보적인 목적에서가 아닌 보호적인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 가능한 대안에 관해 보고해 주십시오.

11-1.(형법상 고문죄 규정) 고문을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고문의 유형은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가혹행위) 등 「형법」 및 특별형사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CAT/C/32/Add.1. paras. 105-110 참조).

11-2.(고문 및 학대에 대한 독립적 조사) 고문 및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에서 조사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절차와 권한에 따라 권고를 내린다. 검찰의 경우 검찰 전담 검사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서는 특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한다. 고문을 당한 개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진정,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등도 가능하다. 경찰청도 경찰관 대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해당경찰관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를 하도록 한다.

11-3.(고문행위 기소 형법 조항 및 처벌) 경찰은 2012년~2015. 7. 독직폭행혐의로 2012년 1건, 2013년 1건, 2014년 1건에 대해 해임 2건, 견책 1건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라 2011년 이후 기소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5.
기소(불구속 구공판)	2건	1건	1건	1건	1건

11-4. (보호장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내지 제99조는 보호장비의 사용이 가능한 상황, 보호장비의 종류와 사용요건, 보호장비의 남용금지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99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을 위한 절차로는 사용 전에 수용자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우선 수용자 상담을 통해 자발적인 심적 안정을 유도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보호장비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무관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로서의 독방구금조치로는 금치 처분이 있는데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이 사전, 또 집행 중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심리사회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 정신병원(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사람의 수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자들을 독방

감금조치, 신체적 폭력, (신체)속박 그리고 과도한 약물치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2-1.(정신병원) 정부는 정신보건 관련 종전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의 정책을 조기발견·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을 2014년 1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법에는 비자발적 입원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 입원 후 6개월마다 시행하는 계속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최초 입원 후 3개월, 6개월 되는 때에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퇴원 심사 주기 단축을 통해 비자발적 입원자 수가 감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입소자의 독방 감금조치, 신체적 폭력 및 속박에서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정신보건법」에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 강요 금지, 폭행 또는 가혹행위 금지, 종사자 등에 의한 자의적 격리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국가보고서 제167항, 제168항에 기재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청구는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119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94건이 인용되었다. 정부는 인신보호관이 수용시설의 위법수용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위법수용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도록 하는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2014년 4월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

12-2.(장애여성강제불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적 불임이나 낙태가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다. 과거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시 유전적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1999년 폐지되었다.

13. 군대 내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와 같은 혐의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며 피해자는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제시해주십시오.

13-1. 국방부는 군대 내 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현재 「군형법」 상

영내폭행죄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인권상담 관제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 군인권모니터단, 국방헬프콜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군대 내 폭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군법무관 및 군인권교관을 통해 군대 내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인권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군대 내 인권의식 향상과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2.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내용에 있어 지휘관이 폭행행위를 목인 또는 방조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등 국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의 형태로서 보상을 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가 직접 피해자를 위한 특별 보상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13-3. 한편 국회는 2014년 10월 31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범죄의 빈발 원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 특위는 군 사법체계 개선, 군 복무 부적격자 심사 및 부적응자 관리 체계 개선, 군 성폭력 대책 및 군 의료체계 개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장병 교육체계 개선, 군 음부즈만제도 도입 등 5개 분과별 소위 활동을 기초로 23개의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관련 법안 10여 개를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

## **개인의 자유 및 안전,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공정한 재판(제 9,10,14 및 24조)**

14. 모든 형사상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판사 또는 법률이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즉각 인치되어 구금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받게 되는 자동적 권리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또한 허용되는 재판전 구금 기간을 제시해 주십시오.

14-1. 관련 내용은 국가보고서 제159항~제164항에 기재되어 있다. 헌법 및 「형

사소송법」에 따라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률에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사람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또한 체포 또는 구속된 모든 피의자는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적부심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14-2.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의 경우 공소제기까지 일반형사사건피의자는 최장 30일,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는 최장 50일까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의 공소 제기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씩 2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상소심에서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 기간 내에 법원이 반드시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신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인데 통상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진다. 미결구금 상태는 확정된 형의 일수에 산입된다(「형법」 제57조).

15. 비호를 구하는 아동을 포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구금 지속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그와 같은 구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사법적 심사를 하는 것이 동 규약 제9조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당사국이 동행자가 없는 아동을 포함하여 비호를 구하는 아동을 정기적이며 적기의 구금에 대한 심사없이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한다는 (NGO들의) 보고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구금에 관해 비구금형 대안을 제공하고, 이러한 구금이 오직 최종적 수단으로서,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15-1.(외국인보호에 대한 사법심사) 제4차 국가보고서 제154항에 기재된 법무부장관의 보호연장승인제도를 통해 법무부장관은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처분한 보호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적 또는 남용적 보호를 방지하고 있다.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을 위해 대기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보호외국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의 구금과는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 또한 보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제55조)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즉 보호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지속기간과 관련된 법적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호명령서의 집행 시 반드시 보호되는 외국인에게 보호명령서를 보여주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호 관련 사실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보호절차는 규약 제9조 상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규정 외의 다른 규정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15-2.(난민아동구금) 비호를 구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지 않으며, 그 밖의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동을 보호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보호방을 배정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면담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출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발급 지원 등을 통해 송환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출국 시까지 평균 보호 기간은 최근 3년간 7.8일이다. 따라서 동행자 없는 아동을 포함하여 비호를 구하는 아동의 구금에 관한 NGO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없다.

15-3.(보호제도 개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진 출국의사를 표시하면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하여 보호하지 않으며, 보호외국인에게 권리구제나 질병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는 보호일시해제를 하고 있다. 또 보호기간 단축을 위해 보호기간이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인 체불임금 문제 등 고충 파악과 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귀국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조기 출국을 지원한다. 따라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자진출국 의사가 없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조치를 하며, 그 경우에도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보호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은 12.2일이다.



16. 위원회의 기존 권고(CCPR/C/KOR/CO/3, para. 14)와 관련하여, 당국이 신문도중 변호인의 참여를 여전히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히 밝혀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이에 관한 근거 및 이와 같은 제한이 동 규약 제 9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망명신청자 외에) 외국인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한다는 정보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십시오.

16-1.(변호인의 신문참여제한) 피의자 조사 시에도 변호인 접견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변호인의 참여는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을 뿐이므로(「형사소송법」제243조의2, 「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 이와 같은 제도는 규약 제9조의 자의적 구금 방지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와 양립한다. 아울러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행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제4항).

16-2.(공항송환대기실)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은 2014년 10월부터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입국불허된 외국인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송환대기실에 머무르거나 떠날 수 있고, 수용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17.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구금 상황을 개선하고, 구금시설 밖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2010년 2월 교정시설이 수용자들이 민사, 행정 또는 가사소송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때 수용자들로부터 사전에 호송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침에 관한 정보와 이러한 지침이 개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17-1.(과밀수용)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3개소 신축, 5개

노후시설의 이전 및 시설확대를 추진 중이다.

(외국인 보호 시설 구급 개선) 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0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환자임산부·노약자·19세 미만 보호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 보호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2015년 6월에는 관련 규칙에 성소수자 인권존중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도 외국인과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소의 직원을 응급구조사로 양성하기 위하여 국군의무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 중이다. 보호외국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보호시설 운영기관은 119구조대를 통한 긴급후송체계, 인근 의료기관과 진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외부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료) 2015년 6월 현재 27개 교정기관에 원격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병원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고, 외부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치과 등의 전문의를 교정시설에 초빙하여 소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환자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교도소 신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7-2. (출정비용 징수) 소송출정비용 징수는 형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사, 행정, 가사소송 등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송출석을 위해 수용자가 출정하는 모든 경우에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출정비용을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정 비용의 납부를 청구하고 있으며, 출정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용자를 출정시킨 후 사후적으로 영치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정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 노예상태 및 예속상태의 제거(제 8조)

18. 형법상의 “인신매매”의 법적 정의에 의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가 금지되

고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강제노동, 착취와 학대에 노출되도록 한다고 보고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상의 제한, 즉 고용주의 허가에 의해서만 직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사항을 다루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a) 취약한 인구집단, 특히 외국인근로자, 한국 장애 남성 그리고 성매매로 체포된 사람들 중 인신매매 피해자를 파악해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b) 언론과 NGO가 2013년 보고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신매매에 정부가 연루되었다는 주장을 수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c) 위협, 신체적·성적 괴롭힘과 폭력, 주당 휴일이 없는 과도한 업무시간, 저임금, 비인도적인 대우 및 부적절한 숙소와 식사와 같은, 외국인 농업 근로자 및 한국선적 어업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강제노동과 착취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d) 예술행행비자(E-6) 및 국제결혼브로커들이 이주 여성을 강제성매매 또는 강제노동을 위해 인신매매에 대한 위장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인신매매 사건에 관해 착수한 수사 및 기소 통계 정보와 개정 「형법」에 따른 실제 유죄판결과 피해자에게 부여된 구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일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한국 남성들이 엽전에서 강제노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4년 3월 개시된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해 보고해 주십시오.

18-1.(형법상 인신매매정의) 2013년 팔레르모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형법」을 개정하며 관련 장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다. 또한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의 목적을 추가하였으며,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인신매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이 가능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는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18-2.(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변경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근로계약의 만료 후 사업주의 갱신거절, 사업장의 휴·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변경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2012년 7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즉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발생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

18-3.(외국인, 장애남성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2014년 2월 농어촌 지역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 사례를 점검하도록 하고, 검찰에 장애인보호 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여 장애인시설, 염전, 선박 및 산판, 목장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경찰, 해경,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별 장애인시설 현황을 분석하여 인권침해·비리 첩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신고의무직군을 기존 1개에서 21개 직군으로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 인신매매 발견 및 개입 가능성을 높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학대 현장에 긴급출동하고 피학대 장애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하도록 하였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내지 제59조의9).

18-4.(정부 연루 인신매매) 2013년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정부나 공무원이 인신매매에 연루된 사건은 없다.

18-5.(외국인농업근로자, 선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주 대상 외국인 고용 관리 교육,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농업 부문은 업종의 특성 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이 약 32%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3천여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 30%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실시하도록 하였고, 우수기숙사 제공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발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취업교육 시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을 교육하고, 모국어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교육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한국적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2012. 5.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원양어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2. 9.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선방안에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지급체계 개선, 임금체불·폭력 등 신고상담센터 운영, 선원근로감독 강화, 외국인선원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선주·선원교육 실시 등의 대책이 포함되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15. 1. 6. 「선원법」에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을 신설(제25조의2)하여 폭행, 협박, 감금,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1년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원양어선에 승선하였던 한국인 선원 5명이 인도네시아 선원 9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피의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반면,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나 이 피해자들이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상황이어서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에 피해자들의 소재 확인 등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18-6.(E-6 및 국제결혼이 인신매매가 되지 않도록 한 조치) 정부는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단’ 논의에 따라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종사자들 다수가 근무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2014년 3월~11월까지 업소 운영 실태 및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하였다. E-6비자 발급 사전 단계인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위법사태가 있는 공연기획사 및 공연업소 대표에게 E-6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시 여성경찰관을 참여시키고, 성매매업주·건물주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에 중점을 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성매매 단속 시 피해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8-7.(인신매매 수사결과) 인신매매사범, 즉 「형법」(영리등을위한약취등,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 추행등목적약취·유인등, 인신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매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간음약취, 간음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부녀매매, 영리약취, 영리약취·유인등, 영리유인, 추행약취, 추행유인) 등 관련 사건의 처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	접수	처분	기소	불기소	기타
2009	459	445	162	150	133
2010	366	359	114	121	124
2011	438	432	142	156	134
2012	428	445	178	128	139
2013	401	387	110	128	149
2014	507	489	145	145	199
2015. 5.	185	172	51	57	64

<표> 인신매매 관련 죄 사건 처리 현황

(단위: 명)

18-8.(염전노예사건)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인권보호방안’을 발표하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위 18-3항 답변과 같다. 정부는 공익변호사와 협력하여 피해 장애인들의 염전사건 학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등록비용과 등록절차를 지원하여 장애인으로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고용부는 13개 섬, 733개소 신안 염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73개소 근로자 242명의 임금 39억원의 미지급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124개소 근로자 191명의 체불임금 20억원을 청산하도록 조치하였고, 임금 미청산 사업주 48명을 사법처리하고 이들 중 근로자 폭행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15명은 구속 수사하였다. 2015년에도 매 분기마다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염주 대상 인권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014년 2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임금착취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된 신안군 이외 모든 도서의

염전, 어선, 농장, 벌목장 등 총 38,352개소에 대해 점검 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 37명을 형사입건하여 20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사생활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제17조)

19. 외국인, 수용자, 군인을 대상으로 의무적 HIV검사를 실시한다는 보고와 병원이 환자의 사전 동의없이 HIV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들이 규약 상의 국가의무와 어떻게 합치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19.(의무적 HIV검사) HIV등 감염병은 단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병영생활을 해야 하는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혈액혈액 채취 전 본인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외국인 중 90일 이상 체류자 중 영어회화강사에게 국내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시 HIV검사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이는 교육받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중보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병원에서 시행되는 HIV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2008년 3월 익명검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중 보건을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것으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로 보기 어렵다.

20. 개인의 통신(인터넷, 전화, 이메일, 팩스 통신을 포함)과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및 도청, 분석, 사용 및 저장에 관한 현행 법률과 실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침해에 대한 현재의 법적 보호(제도)와 그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다음의 행위가 규약 제17조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a)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회현장 인근의 모든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경찰의 “기지국” 조사; (b)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c) 전화, 전기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6, 12, 3 개월 동안 사용자의 통신정보를 보유하는 것; (d)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통제하고, 위치 정보를 확인하며, 사용자가 능한 기능과 데이터를 찾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것. 또한 당사국이 전기통신사업자 “긴급도청(wiretap-ready)”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는지 밝혀주시시오.

20-1.(개인통신보호법률과 실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의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개인정보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수집 및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저장·보관하는 동안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밖에도 개인의 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위치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 개인 통신에 대한 불법적 침해행위를 처벌한다. 또한 동법은 감청 집행절차를 규정하고,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규정, 감청 집행을 통해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감청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국회의 통제규정 등을 두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를 막고 있다. 검사나 수사관서의 장 등은 개인의 통신이나 데이터에 관련된 통신자료(「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의 3가지 유형의 자료만을 법률상 정해진 목적과 요건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수사 기관은 형사재판의 입증 등 제한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통신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20-2.(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침해 방지제도 실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시하여(동법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과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여(동법 제30조)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그 이용·제공 현황을 열람하거나 제공 요구할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는 임시조치제도를 규정해두고 있으며,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안을 2013년 마련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시조치에 대하여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시조치에 대한 분쟁조정절차를 중립적 위원회가 다루도록 하고, 정보 내용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의 통신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제한조치는 일정한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집행한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루어지고, 압수수색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된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는 등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한 때 그 집행 사실을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있어서도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20-3.(집회장소 기지국 조사)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기지국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은 가능하나, 특정한 범죄와 범죄혐의자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여 자료를 요청할 뿐이다.

20-4.(ISP의 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정보 주체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공된 현황을 열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범죄행위 수사과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자료의 제공여부 및 제공할 자료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 등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한 현황 등을 기록·관리·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집계하여 매년 2회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요청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 합목적성을 갖추었을 때에만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규약 제17조에 위배됨이 없다.

20-5.(통신정보 보유)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유형별로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며, 이 자료는 법원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나 불법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보관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7조).

20-6.(교사의 학생 휴대폰 통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통제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되는 각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학교의 교칙에 휴대폰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율적으로 정한다.

20-7.(긴급도청장비 보유 의무화 개정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모든 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감청설비 등의 부재로 인하여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 이어서, 이로 인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강력범죄나 국가안보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감청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양심과 종교적 신념의 자유,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18, 19, 21, 및 22조)**

21. 위원회의 기존의 권고(CCPR/C/KOR/CO/3, para. 17)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도입을 위해 진전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자들의 성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된 법안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21-1.(대체복무제 도입)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제4차 국가보고서에 기재한 바와 같고, 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4년 11월 병무청에서 실시한 ‘입영 및 징집거부자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8.3%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안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21-2.(병역법 개정) 「병역법」 제81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2015년 7월부터 병무청은 질병, 수감 등의 사유 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기피를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거나 신체검사 또는 입영을 거부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잠정 공개대상자에게 인적 사항 공개 대상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심의한 후 공개대상자를

결정한다.

22. 종교재단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종교 행사나 종교 수업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주십시오.

22-1. 제4차 국가보고서 제264항에 기재된 대법원의 판례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2013년 개정 시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컨설팅 및 시도교육청 자체 연수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종교 과목 개설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등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 “공익을 해치는” 또는 “허위 통신”과 같이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여 인터넷 내용을 차단하는 정부통제기관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권) 옹호자들이 공익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 허위 정보를 유출하였다며 형사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국은 (a) 명예훼손의 광범위한 정의를 개정하고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며, (b)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적시해 주십시오.

23-1.(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 재판계속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 무죄구형, 항소취하를 하고,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 집행 면제 및 재심가능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후에도 공익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없다.

23-2.(온라인상 허위정보유통 형사기소) 단순히 온라인상 허위 정보를 유통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으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70조 제2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형법」 제314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통신을 한 때(「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3-3.(명예훼손 등) 정부는 명예훼손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폐해가 심각하고, 현재의 명예훼손죄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비범죄화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국가공무원은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공무원의 일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개정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24. 위원회의 기존의 권고(CCPR/C/KOR/CO/3, para. 18)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국가보안법」 상의 개념들을, 특히 동 법의 7조에 명시된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동 법이 규약 상 국가의 의무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동 법을 개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건수와 기소 건수가 2008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고, 동 법이 당사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 제7조 상의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고무한다고 하여 기소된 것과,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24-1.(국가보안법) 제4차 국가보고서 제285항~288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법원이 판시한 「국가보안법」의 해석기준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동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및 기소자 수는 아래 표와 같고, 2008년 이후 증가추세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동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주의·주장 등을 찬양·동조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찬양하였다는 이유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규약에 따라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제한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자 통계

	2007년	2008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속자(명)	17	16	18	32	19	26	38	7
기소자(명)	40	27	34	43	39	59	70	34

24-2.(통진당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석기 등 당원 일부가 기소된 것은 단순히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고무한다고 하여 기소된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당원 약 130여명이 북한이 2013년 3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전쟁상태를 선언하자 비밀리에 모여 북한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의 유류저장소, 전화국, 철도 등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하여 이석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 존중, 민주적 의사결정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격하여 이를 훼손하거나 궁극적으로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최종적 수단으로서 정당해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였다.

25.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관련 문제 및 국가공무원의 부패 등 공익에 관한 사안을 보도/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업무에 있어 괴롭힘, 위협과 불법적 감시를 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5-1. 질의내용과 같은 사실은 전혀 없다. 다만 언론인 등이 방송, 인터넷, 인쇄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고소나 고발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수사결과,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09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10조).

26. 평화적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법적·실질적인 제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a) 평화적 집회를 경찰이 실질적으로 허가하는 체제, (b) 시위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적용, (c) 촛불 시위(2008), 용산 철거민 시위(2009), 쌍용차 대량해고 반대 시위(2009), 한진중공업 노조구성원 지지 시위(2011),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진 시위(2014)와 같이, 정부의 정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시위자들을 체포, 구속, 기소한 것, (d) 집회의 참여를 제한하고 시위자의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집회와 시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경찰이 차벽을 사용하는 것.

26-1.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경찰관서에 사전신고만 해도 자유롭게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유, 즉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경찰이 금지통고한 집회시위는 전체 신고건수 대비 0.17% (신고 433,956건 중 761건 금지)에 불과하다.

26-2.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시위대의 불법적인 도로점거가 있는 경우 일정한 단계, 즉 경고방송을 통한 불법행위 중지요청, 주최 측에 종결선언요청, 참가자 대상으로 자진해산요청, 그리고 시간차를 두어 3회의 해산명령을 발한다. 이러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직접 시위대에 대한 해산조치를 취하고, 이 경우에도 현장검거보다는 인도로 이동시켜 도로교통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도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이를 적용하여 사법처리한다.

26-3. 정부는 정부 정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바 없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화염병 등 위험물을 투척하거나, 경찰장비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의 행사가 있을 때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력의 사용 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한다.

26-4.(경찰차벽설치) 차벽은 ‘차벽운용지침’에 따라 적법한 시위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며, 시위대와 경찰력이 직접 부딪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차벽은 불법행위가 명백히 예견될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해제하여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이동을 위해 시민통행로 확보, 통행안내팀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7. 위원회의 기존의 권고(CCPR/C/KOR/CO/3, para. 19)와 관련하여, 법률 및 실제에 있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진전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KGEU)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집단행동과 여타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도자가 체포, 구속되었다는 보고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또한 (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었는지 여부와 (b)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시오.

27-1.(5급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위 1-1에 대한 답변 참조

27-2.(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직 공무원만을 노조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 8. 2. 정부는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전공노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 4. 24. 1심 법원은 정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 전공노는 법상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7-3.(집단행동으로 인한 노조지도자 체포, 구속)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단체교섭·쟁의행위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 주도의 집단행동에 있어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없는 사유로 사업장 점거, 생산라인 중단, 사측 관리자·경찰 등에 대한 폭력행사, 고공농성 등의 행위가 「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정한 범죄에 해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집단행동이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체포,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

27-4.(전교조, 이주노조) 「교원노조법」에 따라 현직 교원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의 해직교원이 노조원으로 인정되거나 전교조의 규약은 해직교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3년 9월 23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13년 10월 24일 노조아님 통보를 하였으며 통보 당일에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4년 6월 19일 고용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2심 재판이 계속 중이며 전교조는 법상 노조 지위를 잃은 상태이다. 한편 노조가입 대상을 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2015. 5. 28. 결정,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한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위에 관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 25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불법체류 외국인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취소되었으며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노조설립 신청에 대한 재처분이 있을 계획이다.

## 아동의 권리 (제24조)

28.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극적에 관계없이 적절한 출생등록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해 주십시오. 당사국이 부모 중 한명만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시 한국 국적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28-1. 대한민국의 국적제도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면 국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출생신고의무자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해태한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안 외에 출생증명서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관련법률 개정안도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2. 현재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생한 아동은 출생지가 대한민국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